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53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조배숙·성일종·박준태

장동혁 · 최수진 · 엄태영

조경태 · 정점식 · 조정훈

조지연 · 정희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전부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자치행정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례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는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법에는 핵심 요소와 관련된 특례가 빠져 있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받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재정자주도의 향상, 자치행정의 기반 마련, 지방의료원 활성 화 등 농어촌지역의 필수의료체계의 구축, 지역특화 전략사업의 육성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안 제24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농생명산업지 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양성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 지역특화 산업 지원(안 제41조의2, 제77조의2, 제78조의2 신설)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장소 또는 조립 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 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가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에 대한 도지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안 제57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하며, 산림청장이 산악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대부·매각·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 추가(안 제63조) 법무부장관이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 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함.

마.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안 제66조의2 신설)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안 제116조의2 신설)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인건비성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안정적인 재정 확보(안 제116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차액의 100분의 2 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더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안 제116조의4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으로,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을 "공유재산"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를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술평균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 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수 있다.
 -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 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 및 지 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편제3장제1절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내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악 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8조제5 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보호지역에서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1.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등산로 또는 탐방로(쉼터, 생태교량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비
 -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 시설의 설치
 - 4.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 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궤도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13호 및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

구하고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 「궤도운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⑥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 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 목원에 필요한 시설
- 4.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시설
- ⑦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

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 산악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필 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⑧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대부・매각・교환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새만금 고용특구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년농업인에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

-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편제4장제2절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8조의2(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에 대한 도지사 인증을 할 수 있으며, 도내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사 인증 및 해제의 기준·방법,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편제3장에 제116조의2부터 제1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6조의2(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16조의3(지방교부세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 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6조의4(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 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수의료 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범위 및 절차, 사용처등에 관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제116조의5(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116조의4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4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법률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 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 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 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전북자치 도 소유의 부동산을 입주기업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 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 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u>종사</u> 하는 자를 말한다-----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

<u>균한 금액</u>으로 한다. <<u>신 설></u> 균한 금액 이상----.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과 도지사는 농생 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 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 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 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

<u><신</u>설>

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 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 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 항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 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악 관광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1.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

 른 궤도의 건설
-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 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를 받은 자는 기간내 전북자치 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 례)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 는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 2조 및 제18조제5항에도 불구 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 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 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의 보호지역에서 산악관광사업 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를 할 수 있다. 터, 생태교량 및 전망시설을 트 궤도의 건설
-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4.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 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 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 사업
- ③ 「자연공원법」 제18조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산악관광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 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한다.
- ④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 따른 등산로 또는 탐방로(쉼 1.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
- 포함한다)의 설치ㆍ정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등산로 또는 탐방로(쉼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 터, 생태교량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정비
 -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4.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 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 <u>의 공원시설</u>의 설치 및 공원 사업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궤도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궤도 운송법」 제2조제13호 및 「자 연공원법 _ 제18조제2항제1호 <u>나목에도 불구하고</u>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 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산 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 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

 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 목원에 필요한 시설 ⑤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 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 ④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 「궤도운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호의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절할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절할수 있는 범위는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⑥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 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 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 다.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u>⑥</u>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u>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u> 「궤도운송법」 제4조의2제1항 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 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설

- 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 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 설
-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 4.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 른 궤도시설
- ⑦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 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 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와 협의하여 산악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 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 분할 수 있다.
- ⑧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 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필 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대부 ·매각·교환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 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 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 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 리 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유림에 시설물을 기부·철거하
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
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
<u>다.</u>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새만금 고용특구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u>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u>
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u>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u>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청년농업인에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
이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_

<신 설>

<신 설>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수 있다.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요청 등 특례)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을 따른다.

제78조의2(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 자치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 혁신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에 대한 도지사 인증을 할 수 있 으며, 도내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사 인증

<신 설>

<신 설>

및 해제의 기준·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6조의2(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 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6조의3(지방교부세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

<신 설>

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 부세법 1 제8조의3제2항에 따 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 를 반영하는 항목 및 산정기준 을 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4(지방의료원의 기부금 품 모집 특례)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 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계2조 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 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 다.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u>설></u>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범위 및 절차, 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제116조의5(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116조의4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4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 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제131조(과태료) <신 설>

-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가 부과·징수한다.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과태료) ① 제41조의2제5 항을 위반하여 전북자치도 관 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 를 운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③ <u>제1항 및 제2항</u>-----

-----.